

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건설기계명			건설기계 등록번호		
변경 내용	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일자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·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제출서류	1.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가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. 건설기계등록증 다. 건설기계검사증 2.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: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고: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. 가.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: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나.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: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	수수료 1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

